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 중 갑 의원)

의 안 변 호	23-74
------------	-------

발의년월일: 2023. 6. .

발의자: 신중갑, 김승수, 권인순, 오욱자,
이상원, 장정희, 채우진, 한선미

1. 제정이유

보육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신장하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안 제3조)
-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3. 5. 18. ~ 5. 23.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채용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9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8조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정혜민
연 락 처	02-3153-8912